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의 書誌的 研究

A Study on the repaired Bo-sa Wonjong Gongsin Nokgwon

진 나 영 (Jin, Na-Young)*

송 일 기 (Song, Il-Gie)**

◁ 목 차 ▷

1. 緒 論	3.2 體制 分析
2.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의 頒賜過程 및 現存本	4. 錄券의 內容 分析
2.1 頒賜過程	4.1 等級別 分析
2.2 現存本 現況	4.2 身分別 分析
3. 現存本の 書誌的 分析	5. 結 論
3.1 形態 分析	<참고문헌>

< 초 록 >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은 숙종이 1682년 庚申大黜陟에 공을 세운 신하들을 보사원 종공신으로 책봉한 후 1689년 己巳換局으로 삭훈하였다가 1694년 甲戌換局으로 복훈하면서 頒賜한 책이다.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 1책을 대상으로, 녹권이 반사된 사유 및 경위를 알아본다. 녹권의 형태와 그 체제를 자세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녹권에 기재된 공신들을 각 등급별로 나누어 책봉된 공신의 직함과 신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은 급속활자 중 四鑄甲寅字인 戊申字로 인출되었으며, 녹권의 체제는 크게 卷首·本文·卷末의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242개의 직함에 모두 3,940명(1등 396명, 2등 736명, 3등 2,808명)이 기재되었으며, 공신의 직함과 성명이 나열되었다. 대체로 등급이 높을수록 品階 또한 높은 편이며, 문관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원종공신들의 신분을 4개의 계급으로 분석한 결과, 다양한 신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양반 2,267명, 중인 681명, 양인 503명, 천인 48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양반이 원종공신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要語: 保社原從功臣錄券,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 보사공신, 보사원종공신, 무신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시간강사(jny415@naver.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교신저자)

접수일: 2014년 12월 5일 최초심사일: 2014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24일

<ABSTRACT>

the repaired Bo-Sa Wonjong Gongsin-Nokgwon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 is a book which recorded the titles of position and the names of retainers who made Suk-jong into Chosun dynasty's king. This study aims to research into existing *the repaired Bo-Sa Wonjong Gongsin-Nokgwon*, which were to analyze the reasons of grant, structure and forms, the characteristics of meritorious retainers' official positions and social status. As the result, *the repaired Bo-Sa Wonjong Gongsin-Nokgwon* is the metal typologic book which was made up Mu-Sin (戊申) letter type. The structure of the *the repaired Bo-Sa Wonjong Gongsin-Nokgwon* was composed of the beginning · the body · the end. Bo-sa Wonjong meritorious retainers formed the total of 3,940 persons (1st grade: 2,267 persons, 2nd grade: 681 persons, 3rd grade: 489 persons) with 242 official titles. Also an analysis of their social status confirmed that 2,267 persons were "Yang-ban(兩班)" which constituted the largest group (2,267 persons: 57.5%), "Jung-in(中人)" were second group (681 persons: 17.3%), "Yang-in(良人)" were 503 persons(12.8%) and "Chun-in(賤人)" were 489 persons(12.4%).

Key words: *Bo-sa Wonjong Gongsin-Nokgwon*,
the repaired Bo-Sa Wonjong Gongsin-Nokgwon,
Bo-sa Gongsin, Bo-sa Wonjong Gongsin, Mu-sin letter type

1. 緒 論

조선시대 공신제도는 대체로 고려시대의 것이 그대로 이어졌으나 이전보다 그 규모나 인원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공신 책봉을 위한 임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포상인원이나 규정을 정하고 녹권의 발급까지 맡아보게 하였다. 또한 原從功臣 제도를 두어 正功臣보다는 상대적으로 錄勳하였다. 특히 원종공신의 인원수는 대체적으로 많았으며 이들에게 일일이 녹권을 반사하고 포상을 실시하였다. 이렇듯 조선시대에 원종공신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원종공신 및 原從功臣錄券과 관련된 사실은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기타 문헌에도 그 기록된 바가 많지 않다. 원종공신녹권은 원종공신의 책봉과 관련된 사실을 비롯하여 당시의 역사적 사실 및 시기별 녹권을 비롯한 조선시대에 간행된 서적의 서지적인 특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대상 자료인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은 숙종 6년(1680)에 있었던 庚申大黜陟 때 세운 공적으로 책봉된 보사원종공신에게 그 이듬해(1681년)에 반사되었으나, 숙종 15년(1689) 己巳換局으로 인해 削勳과 동시에 폐해졌다가, 숙종 20년(1694) 甲戌換局 사건으로 復勳되면서 다시 戊申字로 인출하여 공신에게 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보사공신 및 보사원종공신 그리고 이들에게 발급된 녹권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존본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을 대상으로 녹권이 발급되었던 당시의 역사적 사건과 함께 공신 책봉 및 녹권 발급의 사유를 알아보고, 현전하는 녹권의 형태적 특징과 그 편성체계를 살펴본다. 또한 녹권에 기재된 원종공신의 등급을 구분하여 그들의 職銜과 身分에 대한 각각도 분석을 통해 책봉된 원종공신의 특성 및 그 당시 사회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 결과 이 연구는 보사원종공신과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2.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의 頒賜過程 및 現存本

2.1 頒賜過程

保社功臣은 숙종 6년(1680)에 庚申大黜陟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들은 숙종 15년(1689) 己巳換局으로 削劾되었다가 숙종 20년(1694) 甲戌換局으로 復勳되었다. 이에 따라 공신에게 반사한 녹권 또한 복훈시 다시 頒給하였다. 그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保社功臣의 冊封過程

년	월	일	내용
숙종 6 (1680)	05	18	공훈에 따라 金錫胄는 淸城府院君, 李立身은 陽興君 등으로 삼다.
	08	30	회맹제를 열고 승정전에서 보사공신의 교서축을 반포하다.
숙종 15 (1689)	07	18	여러 신하들과 경신년 옥사의 신원을 논하다.
		25	보사공신을 혁파할 것을 명하는 교서를 반포하다.
숙종 20 (1694)	윤5	07	보사공신의 자손들을 녹용하도록 명하다.
		24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여 복작과 복훈 및 과거에 대해 논하다.
	06	05	신완·김진귀 등이 공신의 녹훈에 대해 건의하다.
	07	19	국옥을 다룬 이들을 보사공신에 추가로 녹훈하다.
	10	12	보사공신을 추복한 교서축을 반포하고, 이에 중외에 교서를 반포하다.

숙종대에는 顯宗代에 이어 남인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나 숙종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남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던 중, 남인의 領袖인 許積이 그의 조부 許潛의 시호를 맞이하는 잔칫[延謚宴] 날에 숙종의 허락 없이 궁중에서 사용하는 龍鳳遮日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숙종은 남인

을 요직에서 축출하고 서인을 등용했다. 또한 서인들이 허적의 서자인 許堅과 福昌君, 福善君, 福平君 등이 역모를 꾀하다고 고변하였다. 이로 인해 남인들이 대거 처형·축출되었고, 정권은 서인이 잡게 되었는데, 이를 ‘庚申大黜陟’이라고 한다. 이 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보사공신으로 책봉하였고, 정공신은 6명으로 소수였던 반면에 원종공신은 3,992명에 달하였다.¹⁾

그러나 숙종 15년, 宋時烈이 賜死되고 金壽興·金壽恒 등을 비롯해 노론이 물러나고 남인이 다시 등용되었던 기사환국으로 정국이 바뀌자, 동년 7월에 보사공신 및 보사원종공신 전원을 공신에서 삭제하였다. 다시 5년 후인 숙종 20년에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등용되었고, 경신년에 허견과 복선군 등이 역모를 도모한 것이 분명하다는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때 기사환국으로 죽은 사람들의 관작을 추복하고 죄를 얻었던 사람들이 풀려나면서 보사공신과 보사원종공신도 회복되었다. 정공신의 경우, 숙종 6년에 책봉된 공신 중 그 수효가 조정되어 5명만 공신으로 복훈되었으며, 이와 같은 예에 따라 원종공신도 수효 등의 조정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공신녹권 또한 다시 인쇄하여 발급되었는데 녹권명인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 중 ‘改修’라는 단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2 現存本 現況

국내외 국가도서관을 비롯한 대학도서관의 고서목록을 살펴본 바, 현존하는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은 11책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1책의 소장처 및 청구기호는 다음 <표 2>와 같다.

1) 정공신은 1등은 金萬基·金錫胄, 2등은 李立身, 3등은 南斗北·鄭元老·朴斌 등 6명이었고, 동년 11월에 2등에 李師命·金益勳·趙泰相·申範華, 3등에 李光漢·李元成 등이 추록되었고, 이전 3등공신이었던 정원로는 공로가 부실했다는 혐의로 공신에서 삭제되었다. 원종공신은 『保社錄勳都監儀軌』에 따르면 1등 411명, 2등 742명, 3등 2,839명으로 총 3,992명이 책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현존본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의 現況

No.	소장처	청구기호
1	고려대학교	경화당B8-A3-26
2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31-258
3		일산古2513-30
4	규장각	奎5562
5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
6	숭실대학교 도서관	920.051-보5106
7	연세대학교 도서관	929.3 공신록 보
8		929.3 공신록 보-나
9		929.3 공신록 보-가
10	장서각	B9E-4
11	충남대학교 도서관	史.記錄類-844

위의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은 당시 발급된 부수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량이 현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보사원종공신에 대한 정보는 『실록』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녹권을 통해 원종공신의 반사사유와 직함 및 성명, 포상규정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어 그 가치가 높다. 이들 공신녹권은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깨끗이 보존된 것이 남아 있어 녹권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3. 現存本의 書誌的 分析

이 장에서는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의 형태적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 녹권의 체제를 분석한다. 형태 분석에서는 현존본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을 통해 녹권의 형태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체제 분석에서는 녹권을 크게 卷首·本文·卷末의 3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내용과 함께 그 특징을 알아본다.

3.1 形態 分析

『보사원중공신개수녹권』은 숙종 20년(1694)에 금속활자 중 사주갑인자인 戊申字로 인출한 1책(55장)으로 이루어졌다. 현존하는 공신녹권 중 무신자로 인출된 녹권은 『보사원중공신개수녹권』과 영조 4년(1728)에 발급된 『奮武原從功臣錄券』 등 2종으로 파악된다.

연구대상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古朝31-258)으로, 線裝 형태로 제책이 되었다. 表題는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으로 墨書되어 있다. 卷首題는 녹권의 녹권명인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이며, 그 아래에 ‘康熙33年5月日承 命釐正’이라는 기록이 小字雙行으로 있어, 본 녹권이 1694년에 개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보사원중공신개수녹권』의 형태서지사항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국립도서관본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의 書誌事項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 / 保社復勳都監 編. - 戊申字本. - 漢城: 保社復勳都監, 肅宗 20(1694)年. 1冊(55張): 四周雙邊, 半廓 24.6 × 17.2 cm, 10行18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32.0 × 20.9 cm. 版心題: 保社原從功臣錄券 印記: 施命之寶
--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邊欄은 사주쌍변이고, 半廓의 크기는 24.6 × 17.2 cm이고 전체 책의 크기는 32.0 × 20.9 cm이다. 半葉을 기준으로 10행 18자씩 배자되어 있고, 계선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중앙의 版心部에는 ‘保社原從功臣錄券’이라는 관심제가 있으며, 어미는 내향2엽화문어미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변란과 계선, 그리고 계선과 어미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어 금속활자본의 특징을 여실히 볼 수 있다. 印章은 「施命之寶」가 녹권의 受給者가 기재된 卷首題面, 3등공신의 직함과 성명이 끝나는 부분, 보사녹훈도감의 구성원을 기재

를 시작한 면 등 3곳에 朱印되었다.

3.2 體制 分析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의 체제는 크게 卷首·本文·卷末의 3부분의 체제로 구분된다. 각 부분의 구성과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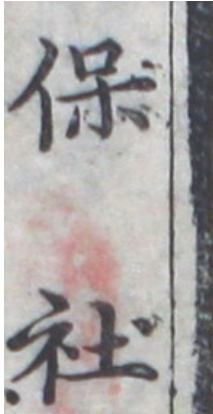
<표 4>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의 體制 構成

區分	內容		印章
卷首	卷首題	錄券名	受給者 姓名 위에 「施命之寶」朱印
	受給者	職銜 姓名	
本文	奉敎日 및 奉命者	날짜 (공신책봉) 職銜 姓名	三等功臣 마지막에 「施命之寶」朱印
	傳旨	傳旨 ... (책봉사유)	
	等級別 功臣	職銜 姓名	
	奉敎日 및 奉命者	날짜(포상 및 특전 시행) 職銜 姓名	
	傳旨	傳旨 ... (등급별 포상규정)	
卷末	功臣都監名 및 都監員	發給機關名 각 도감원의 職銜 및 姓名	都監員의 시작부분에 「施命之寶」朱印

권수의 체제는 권수제, 녹권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으로 구성되었다. 본문의 체제는 공신 책봉과 관련된 奉敎日과 奉命者, 녹권의 반사사유 및 경위,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 포상 시행과 관련된 봉교일과 봉명자,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과 이를 시행한 기관으로 이루어졌다. 권말의 체제는 녹권의 발급기관명, 발급기관 구성원의 직함과 성명으로 구성되었다.

3.2.1 卷首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의 권수 체제는 권수제, 녹권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으로 구성된다. 권수제에는 녹권명을 기재하였는데, 녹권명 중 ‘保’와 ‘社’ 사이의 간격이 글자 한 자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社’가 社稷을 뜻하는 글자이므로, 이 글자 앞의 1자의 공격을 뒀으로써 높임과 존숭의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것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



『광국원종공신녹권』

<그림 1> 錄券名 體制에 대한 比較

그 다음 행에는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을 나타냈다. 조선 세조대에 발급된 『좌리원종공신녹권』의 경우는 금속활자로 인출된 것이나, 수급자의 직함, 성명 사항을 필사하였으나 본 녹권은 모든 내용을 금속활자로 인쇄하였다.

3.2.2 本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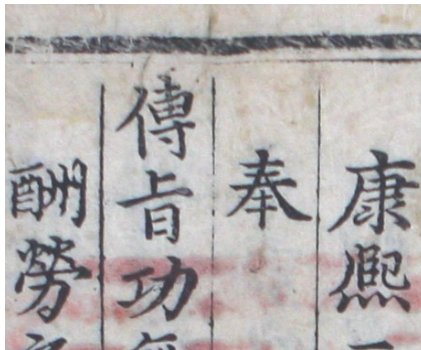
본문에서는 공신 책봉에 관한 명을 받은 사람인 봉명자의 직함과 성명, 공신을

책봉하는 사유의 내용을 담은 傳旨,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 포상 및 특전 시행에 관한 명을 받은 사람의 직함과 성명, 등급별 포상 및 특전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의 本文 內容

順序	內容	奉命者
1	康熙 20(1681)年 6月 8日 원종공신 책봉을 하라고 명함	右承旨 宋昌敬
2	傳旨(공신 책봉 경위 및 사유)	-
3	각 등급별 공신의 직함과 성명 나열	-
4	康熙 20(1681)年 6月 8日 원종공신에 대한 포상규정 및 특전을 명함	右承旨 宋昌敬

숙종 7년(1681) 6월 8일, 왕의 원종공신을 책봉하라는 명을 받은 사람은 右承旨 宋昌敬이다. 다음 행에는 ‘傳旨’를 표기한 후, 공신을 책봉하는 사유 및 경위에 대한 내용을 나타냈는데, ‘傳旨’는 다른 행의 글자보다 한 글자 위에 기재하였다. 이는 왕이 명한 것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기하였을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전지 부분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의 傳旨 부분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의 전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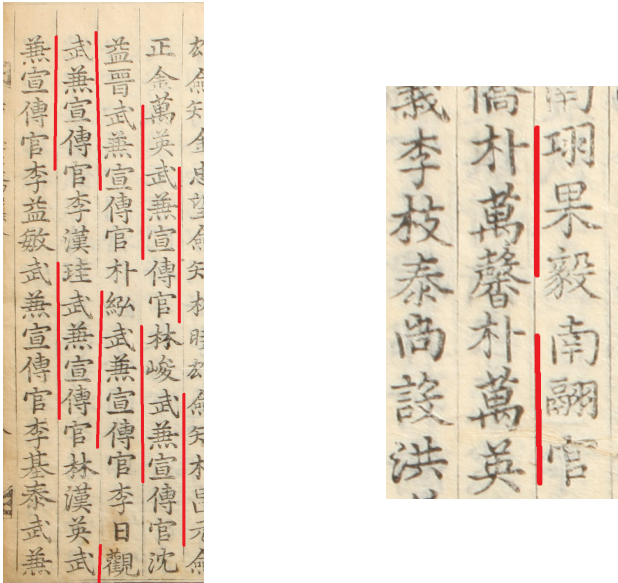
“공의 작고 큼이 없이 나라를 위한 정성은 고르다. 상의 輕重은 있으나 공로를 보답함은 같다. 이에 왕의 총애를 내리노라. 대개 彝章을 따른다. 지난날 종사의 위험함을 생각하니, 실로 옛날 史書에서도 드문 바이다. 近戚에게 사랑을 돈독 하게 하려고 힘썼으나 亂의 階梯의 양성에 이르러 간신에게 委權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禍機의 잠복을 살피지 않았다. 몇 가지 決策을 살피어 하나 둘 마음을 합하여 흉악함을 제거하는 데에 뜻을 펼쳤고 또한 삼 천 여명이 덕을 모아 도왔다. … 죄인의 범죄 사실을 조사한 말에 음모가 모두 드러났으며, 하늘의 벌줌이 빨리 행해져야 하며 남은 무리는 常憲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九廟의 精靈이 기뻐하시고, 나라 안의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그대들 사대 부 및 군·병사, 臺隸 모두와 왕가는 충성을 드러내보였다. … (공신은) 모두 등급은 있으나 實封 외에서 차이가 없으며, 모두에게 원종의 녹권을 내린다. 아아! 이미 후세의 은전을 넓히니 용서는 자손에게 미치게 하라. 사직을 지킨 충성을 폐하지 말지어다. (원종공신 책봉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힘쓰도록 하라. 그러므로 이에 敎示하니 마땅히 그리 알라.”²⁾

위의 전지의 내용을 통해 보사원종공신은 숙종대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지 다음 행부터는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나열하였다. 1등은 396명, 2등은 736명, 3등은 2,808명 등 모두 3,940명이 기재되었으며, 이들의 직함과 성명이 나열되었다. 등급별 공신의 구분 표시는 ‘… 等乙良保 社原從功臣○等’이라는 어구를 墨等으로 나타내어 등급 간 구별을 쉽게 하였다.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의 나열은 뚜렷한 기준이나 순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같은 직함인 공신들이 연이어 기재되었거나 또는 같은 姓氏에 항렬 돌림자를 쓰는 듯한 성명들이 곳곳에 보였으나 특별한

2) 保社復動都監 編.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 『傳旨』.

“功無小大而爲國之誠則均。賞有重輕而酬勞之道則一。茲申寵命。蓋遵彝章。言念曩日宗祏之危。實惟前古史冊所罕。務敦愛於近戚。馴致亂階之釀成。謬委權於奸臣。莫察禍機之潛伏。審幾決策。縱賴一二協心。奮義除兇。亦資三千同德。急書再聞。陰謀畢露於爰辭。天誅亟行。餘黨罔漏於常憲。九廟之精靈式悅。八域之民庶載欣。咨爾士大夫暨茲軍兵吏胥臺隸。而王家顯忠之方。豈以貴賤而或間哉。盟府紀績之日。故盟府紀績之日。咸有等級而不差迺於實封之餘。誕頒原從之券。於戲。既推延世之典。宥及子孫。毋替衛社之忠。勉盡終始。故茲敎示。想宜知悉。”

규칙은 확인 불가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 녹권의 부분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동일한 직함의 공신 나열 부분>

<同姓에 향렬자를 쓴 공신 나열 부분>

<그림 3>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의 職銜과 姓名 기재 사례

대체적으로 왕실의 친족이나 고위 관료로부터 시작하여 신분이 낮은 공신으로 나열하였고, 1등공신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등급이 낮아질수록 공신의 품계나 신분 또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숙종은 원종공신의 책봉을 명했던 날에 원종공신의 처우에 대해 ‘우승지 송창경’에게 전지하였다. 『좌익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된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은 『좌익원종공신녹권』의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숙종대 이전 발급 녹권과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의 褒賞規程 및 特典 내용 비교

區分	褒賞規程		
	숙종대 이전 발급 녹권 ³⁾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	
一等功臣	본인	各加一資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承蔭宥及後世
	부모	封爵	封爵
二等功臣	본인	各加一資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無子孫者兄弟婿姪中 從自願加散官一資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中從自願加散官一資 無子孫者兄弟婿姪中 從自願加散官一資
三等功臣	본인	各加一資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承蔭宥及後世
各等 通政 以上	子孫兄弟甥姪女婿中一人 從自願加散官一資	子孫兄弟甥姪女婿中一人 從自願加散官一資	
物故人	各依本等施行爲於各追贈一資	各依本等施行爲於各追贈一資	
犯罪作散人	並於本品叙用	並於本品叙用	
在喪及 無故作散人	各加一資叙用	各加一資叙用	
永不叙用人	許通仕路	許通仕路	
職牒收取人	並只還給	並只還給	
妾子	限品安徐	限品安徐	
公私賤口	免賤	免賤	
逆黨·逆賊公 事間事被罪者	-	官爵一款舉行安徐	

* 굵은 글씨는 포상규정 및 특전 내용 중 상이한 부분을 나타냄.

보사원종공신에게 내린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은 1등은 각각 1資級을 더하여 자손이 蔭職을 이어받게 하고, 宥赦가 후세까지 미치며, 부모를 봉작하게 했다. 2등은 각각 1자급을 더하여 자손이 음직을 이어받게 하고, 유사가 후세에까지 미치며, 아울러 자손 중에서 自願에 따라 散官 1자급을 더하며, 그 자손이 없는 자는 형제·사위·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여 준다. 3등은

3) 太祖朝에 발급된 『開國原從功臣錄券』과 世祖朝에 발급된 『佐翼原從功臣錄券』, 宣祖朝에 발급된 『宣武原從功臣錄券』을 제외한 녹권을 말한다.

각각 1자급을 더하여 자손이 음직을 이어받게 하고, 유사가 후세에까지 미치게 한다. 각 등급에서 通訓大夫 이상인 경우에는 자손·형제·조카·사위 중에서 1인이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고,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각각 본래의 등급에 의하여 시행하되, 각각 1자급을 追贈한다. 犯罪하여 散인이 된 경우에는 아울러 本品에 叙用하며, 喪중에 있거나 까닭 없이 산인이 된 경우에는 각각 1자급을 더하여서 서용한다. 길이 서용하지 아니할 사람인 경우에는 벼슬길[仕路]에 許通하게 하며, 職牒을 거두어들이지 못한 사람인 경우에는 모두 되돌려 주고, 妾의 아들인 경우에는 限品하지 아니하며, 公·私賤인 경우에는 모두 賤人을 면하게 하였다.

본 녹권과 숙종대 이전에 발급된 원종공신녹권을 비교한 결과, 포상규정 및 특전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위의 <표 6>에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다. 역당에 관련이 있거나 역적으로 인하여 공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벼슬자리를 마련하여 친친히 중용하게 한다는 항목이 추가되었다.⁴⁾ 이처럼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이 이전의 녹권과 다른 명확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만 조선 전기 수직적 사회상이 후대로 지나면서 공신에 대한 포용과 유연성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3.2.3 卷末

권말의 첫 행에는 녹권의 발급을 주관했던 기관인 ‘保社錄勳都監’이 기재되었고, 그 다음 행부터는 그 기관에서 녹권 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보았던 관원의 직함과 성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내용 뒤에 다시 ‘保社復勳都監’의 구성원들이 기재된 점은 이 녹권의 특이점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녹권은 숙종 7년에 반사된 녹권이 동왕 15년 삭훈으로 인해 폐기되었다가 5년 후에 다시 반사되었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숙종 7년의 보사녹훈도감과 숙종 20년의 보사복훈도감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다. 이 내용을 토대로 보사녹훈도감

4) 녹권의 포상규정 및 특전에 관한 내용은 진나영, “朝鮮時代に 刊行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89-104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과 보사복훈도감원의 직함과 성명을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保社錄勳都監과 保社復勳都監員의 官職名 및 姓名

區分	官職名	職銜	姓名	其他
保社錄勳都監	堂上	奮忠效義炳幾協謨保社功臣輔國崇祿大夫清城府院君兼吏曹判書知經筵春秋館事	金錫胄	正功臣 1等
	堂上	奮忠效義炳幾協謨保社功臣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事光城府院君	金萬基	正功臣 1等
	郎廳	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	黃玃	-
	監校郎廳	通訓大夫行司宰監主簿	金錫齡	-
	監造官	禦侮將軍行四山監役官	朴泰斗	-
保社復勳都監	堂上	資憲大夫禮曹判書兼知義禁府事同知經筵成均館事世子左副賓客平川君	申琬	-
	堂上	嘉善大夫漢城府右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光恩君	金鎮龜	-
	郎廳	通訓大夫司僕寺正知製教兼校書館校理漢學教授東學教授世子侍講院司書	李徵明	-
	監校郎廳	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	趙泰彙	-
	監造官	通訓大夫行內侍教官	朴泰殷	-

위의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보사녹훈도감과 보사복훈도감의 구성원은 각각 5명이며, 도감의 관직명이 동일하였다. 堂上 2명, 郎廳 1명, 監校郎廳 1명, 監造官 1명으로 구성되었다. 보사녹훈도감에서의 당상 2명은 성명을 확인한 결과, 金錫胄와 金萬基인데 이들은 보사 정공신 1등으로 책봉되었던 인물이라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4. 錄券의 內容 分析

이 장에서는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에 기재된 공신을 등급별로 직함과 이를 토대로 조사한 신분을 분석하고자 한다. 3등급으로 구분되어 기재된 공신의 직함과 성명을 기초로 하여 등급별 인원수를 분석하여 보사원종공신의 특징을 조사한다.

4.1 等級別 分析

4.1.1 保社原從功臣1等

보사원종공신 1등에 책봉된 사람은 총 396명으로 이들의 직함을 모두 헤아려 보면 140개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확인된 직함을 근거로 이들을 품계별로 분류하여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保社原從功臣1等の 分布現況

品階	職銜	人員數	比率(%)
군, 종친	崇善君, 東平尉, 瀛昌君, 東平君, 錦昌副尉, 東原君, 全坪君, 西川君	8	2.0
정1품	左議政, 領議政, 領中樞, 右議政	4	1.0
종1품	判中樞, 判義禁	4	1.0
정2품	知義禁, 知事, 判書	7	1.8
종2품	同知義禁, 大司憲, 府尹, 同知, 尙膳, 參判, 左尹, 前兵使, 監役	28	7.1
정3품	大司諫, 承旨, 都正, 武兼宣傳官, 副提學, 折衝, 前營將, 前牧使, 正, 尙茶, 左通禮, 右通禮, 宣傳官, 文兼宣傳官, 僉知, 前正	58	14.6
종3품	大護軍, 尙藥, 前府使, 前虞候, 前僉使, 典翰, 執義, 僉使	10	2.5
정4품	司藝, 承傳色, 掌令, 護軍	15	3.8
종4품	經歷, 郡守, 副護軍, 尙冊, 前郡守, 前萬戶, 僉正, 行副護軍	24	6.1
정5품	校理, 尙弧, 正郎, 持平, 直講, 贊儀, 獻納	17	4.3
종5품	都事, 令, 副司直, 尙帑, 前縣令, 判官	35	8.8
정6품	監察, 教官, 教授, 司果, 司諫, 司鑰, 尙洗, 修撰, 前監察, 前別提, 前司果, 正言, 佐郎	58	14.6
종6품	副司果, 部將, 尙燭, 引儀, 前察訪, 前縣監, 主簿, 縣監	30	7.7
정7품	博士, 奉教, 參軍, 行司正	9	2.2
종7품	尙設, 直長	7	1.8
정8품	別檢, 副直長, 著作, 行司猛	6	1.5
종8품	奉事, 前奉事	3	0.8
정9품	檢閱, 正字, 從仕郎, 學錄, 訓導	6	1.5
종9품	假監役, 假引儀, 兼引儀, 副司勇, 副正字, 前監役, 前權管, 前哨官, 參奉, 哨官, 學諭	24	6.1
기타	教練官, 別武士, 別抄, 別破陣, 出身, 忠義衛, 忠贊衛, 學生	43	10.8
合計		396	100

위의 <표 8>을 보면 1등공신에 책봉된 품계 중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품계는 정3품과 정6품이 각 58명인 1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로 품계에 들지 못한 직함을 가진 공신 43명으로 약 10.8%를 차지하였다. 분포를 보면 대체로 2품-6품까지의 직함인 공신이 많은 편이다.

보사원중공신 1등에는 모두 140개의 직함에 396명의 공신이 기재되었는데, 이를 인원수가 많이 기재된 직함의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1等原從功臣: 140개 직함

순위	직함	품계	문/무관	인원수	비율(%)
1	都事	종5품	문관	24	6.1
2	宣傳官	정3품	무관	19	4.8
3	佐郎	정6품	문관	15	3.8
4	書吏	없음	문관	11	2.8
5	承傳色	정4품	문관	9	2.2
	尙洗	정6품	문관	9	2.2
	主簿	종6품	문관	9	2.2
	學生	없음	없음	9	2.2
合計				105	26.3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은 인원을 기재한 직함은 都事로 모두 24명이었고, 이어서 形名·啓螺·侍衛·傳命 및 符信의 출납을 맡았던 선전관이 19명이었다. 六曹 관직인 좌랑은 15명, 중앙 관아에 속하여 문서의 기록과 관리를 맡아보던 하급의 구실아치인 서리는 11명이었으며, 承傳色과 상세, 주부 및 학생 직함인 공신은 각 9명이었다. 이들 직함에 따른 文·武官을 분석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保社原從功臣 1等の 文·武官 現況

區分	人員數	比率(%)
문관	274	69.2
무관	94	23.7
종친 및 인척, 군	8	2.0
없음	20	5.1
합계	396	100

총 396명 중에 문관의 비율이 69.2%로 그 수가 많은 반면, 무관은 94명으로 23.7%였음을 알 수 있다. 종친 및 인척이나 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8명으로 그 수가 적은 편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조선 전기의 녹권에 기재된 1등공신에 대한 품계 등을 비교한 결과, 이전보다는 1등공신의 품계 및 종친 등의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인 점이 특이할만하다.

4.1.2 保社原從功臣2等

보사원종공신 2등에 책봉된 공신은 총 736명이었으며 공신의 직함은 107개로 구성되었다. 직함을 기준으로 이를 품계별로 분류하여 분포된 현상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11>과 같다.

<표 11> 保社原從功臣2等の 分布現況

品階	職銜	人員數	比率(%)
군	晉平君	1	0.1
종2품	嘉善, 同知, 五衛將, 前別將, 前兵使	15	2.0
정3품	兼司僕, 內禁衛, 武兼宣傳官, 上護軍, 宣傳官, 禦侮, 前武兼宣傳官, 前宣傳官, 前水使, 前營將, 前正, 折衝, 正, 參議, 參知, 僉知, 通訓	147	20.0
종3품	大護軍, 府使, 副正, 前府使, 前虞侯, 前僉使	42	5.7
정4품	護軍	2	0.3
종4품	經歷, 副護軍, 庶尹, 前郡守, 前萬戶, 前僉正, 僉正, 行副護軍	43	5.8
정5품	通德郎	5	0.7
종5품	都事, 副司直, 判官	10	1.4
정6품	教授, 別提, 司果, 司鑰, 尙洗, 前監察, 前教授, 前別提, 前司果, 佐郎	83	11.3
종6품	副司果, 部將, 尙燭, 守門將, 習讀, 引儀, 前主簿, 前察訪, 前縣監, 主簿	86	11.7
정7품	司正, 參軍	2	0.3
종7품	副司正, 尙設, 前直長	10	1.4
정8품	司猛, 算員, 尙除	5	0.7
종8품	奉事, 尙門, 前奉事	8	1.0

品階	職銜	人員數	比率(%)
정9품	副奉事	1	0.1
종9품	假引儀, 檢律, 兼引儀, 旗牌官, 副司勇, 前權管, 前哨官, 參奉, 哨官	21	2.9
기타	官奴, 館奴, 內奴, 內吹螺赤, 別監, 別破陳, 保人, 府奴, 寺奴, 私奴, 署奴, 書吏, 庶擊, 書員, 良人, 驛吏, 院奴, 出身, 忠義衛, 忠翊偉, 忠壯衛, 忠贊衛, 學生, 閑良	255	34.6
合計		736	100

<표 1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보사원종공신 2등으로 책봉된 736명 중 기타를 제외하고는 정3품이 147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6품과 종6품이 각각 83명, 86명으로 많았다. 위의 정3품, 정6품 및 종6품에 해당되는 공신은 보사원종공신 2등의 절반 가량의 비율을 구성하며, 기타로는 노비[奴]나 품계에 들지 못한 직함의 공신들로, 양반을 비롯하여 노비의 신분도 공신으로 책봉된 사실을 보여준다. 보사원종공신의 직함은 모두 107개로, 직함별 인원수가 많이 기재된 순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2等原從功臣: 107개 직함

순위	직함	품계	문/무관	인원수	비율(%)
1	出身	없음	없음	99	13.5
2	武兼宣傳官	정3품	무관	67	9.1
3	司果	정6품	무관	43	5.9
4	別監	없음	문관	28	3.8
	書吏	없음	문관	28	3.8
合計				265	36.1

위의 <표 12>에서 보듯이 9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직함은 文科·文科·雜科 등의 시험에 합격한 출신이었고, 그 다음은 67명으로 구성된 정3품 武兼宣傳官이었다. 무관인 司果는 43명으로 3번째로 많은 인원수였고, 별감과 서리는 각각 28명으로 구성되었다. 인원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직함은 대체로 1등의 경우보다는 품계가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 직함에

따른 文·武官을 분석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保社原從功臣2等の 文·武官 現況

區分	人員數	比率(%)
문관	199	27.0
무관	381	51.8
종친 및 인척, 군	1	0.1
기타	155	21.1
합계	736	100

보사원종공신 2등 736명 중에 무관 직함인 공신은 381명으로 2등원종공신 중 절반 이상이 이에 구성되며, 문관은 199명으로 약 27.0%를 차지하였다. 종친 및 인척, 君에 해당되는 공신은 그 비율이 1등원종공신보다는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기타에 해당하는 신분이 낮거나 품계에 들지 못한 직함인 공신의 비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4.1.3 保社原從功臣3等

보사원종공신 3등에 책봉된 공신은 총 2,808명이었으며 공신의 직함은 124개로 구성되었다. 직함을 기준으로 이를 품계별로 분류하여 분포된 현상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14>와 같다.

<표 14> 保社原從功臣3等の 分布現況

品階	職銜	人員數	比率(%)
종2품	別將, 前別將	2	0.1
정3품	兼司僕, 上護軍, 宣傳官, 禦侮, 前武兼宣傳官, 前營將, 前正, 折衝, 通訓	684	24.4
종3품	大護軍, 前僉使	14	0.5
정4품	護軍	8	0.3
종4품	郡守, 副護軍, 宣略, 前郡守, 前萬戶, 前僉正, 定略, 僉正	58	2.1

品階	職銜	人員數	比率(%)
정5품	果毅, 司直, 翊衛, 通德郎	23	0.8
종5품	副司直, 判官	12	0.4
정6품	教授, 別提, 司果, 尙洗, 前監察, 前司果, 進勇	67	2.4
종6품	秉節, 副司果, 尙燭, 前習讀, 前主簿, 前縣監	64	2.3
정7품	司正, 參軍	9	0.3
종7품	副司正, 尙設, 前直長, 直長	32	1.1
정8품	司猛, 算員	3	0.1
종8품	副司猛, 前奉事, 唱準	9	0.3
정9품	尙更	8	0.3
종9품	檢律, 副司勇, 前權管, 前渡丞, 展力, 前參奉, 前哨官, 哨官	50	1.8
기타	嫁私賤, 假書吏, 監奴, 庫奴, 庫直, 貢生, 工匠, 官奴, 館奴, 校奴, 教鍊官, 軍官, 羅將, 內奴, 內吹羅, 奴, 錄事, 燈燭色, 免役, 武藝, 別監, 別破陣, 步兵, 保人, 僕, 府奴, 寺奴, 私奴, 使令, 生員, 書記, 署奴, 書吏, 庶孽, 書員, 水軍, 良人, 御營軍, 餘丁, 驛奴, 驛吏, 營奴, 院奴, 匠人, 田奴, 正兵, 精抄軍, 諸員, 曹奴, 中禁, 出身, 忠順衛, 忠翊偉, 忠翊衛, 忠壯衛, 忠贊衛, 吹螺赤, 吹螺赤, 學奴, 學生, 閑良, 鄉吏, 畫員 ⁵⁾	1,765	62.8
合計		2,808	100

<표 1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보사원종공신 3등으로 책봉된 2,808명 중 기타를 제외하고는 정3품이 2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6품과 종6품이 각각 67명, 64명으로 많았다. 하지만 기타에 해당하는 직함의 공신이 62.8%의 높은 비율을 차지였다. 이러한 점은 1등과 2등의 경우보다는 신분이 낮거나 품계에 들지 못한 직함의 사람들이 3등공신으로 많이 책봉되었음을 보여

5) 嫁私賤, 2명, 假書吏 1명, 監奴 2명, 庫奴 1명, 庫直 1명, 貢生 1명, 工匠 1명, 官奴 110명, 館奴 12명, 校奴 7명, 教鍊官 1명, 軍官 1명, 羅將 26명, 內奴 73명, 內吹羅 1명, 奴 1명, 錄事 4명, 燈燭色 2명, 免役 7명, 武藝 49명, 別監 49명, 別破陣 41명, 步兵 1명, 保人 6명, 僕 2명, 府奴 51명, 寺奴 54명, 私奴 88명, 使令 15명, 生員 1명, 書記 1명, 署奴 5명, 書吏 66명, 庶孽 5명, 書員 27명, 水軍 1명, 良人 395명, 御營軍 1명, 餘丁 1명, 驛奴 5명, 驛吏 15명, 營奴 7명, 院奴 18명, 匠人 3명, 田奴 7명, 正兵 3명, 精抄軍 1명, 諸員 10명, 曹奴 15명, 中禁 4명, 出身 198명, 忠順衛 10명, 忠翊偉 5명, 忠翊衛 25명, 忠壯衛 6명, 忠贊衛 38명, 吹螺赤 1명, 吹螺赤 15명, 學奴 7명, 學生 7명, 閑良 247명, 鄉吏 4명, 畫員 1명이다.

준다. 보사원중공신의 직함은 모두 124개로, 직함별 인원수가 많이 기재된 순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3等原從功臣: 124개 직함

순위	직함	품계	문/무관	인원수	비율(%)
1	兼司僕	정3품	무관	599	21.3
2	良人	없음	없음	395	14.1
3	閑良	없음	없음	247	8.8
4	出身	없음	없음	198	7.1
5	官奴	없음	없음	110	3.9
합계				1,549	55.2

위의 <표 15>를 살펴보면 정예 기병 중심의 친위병인 겸사복 직함인 공신이 5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양인이 395명을 차지하였다. 그밖에 양인 이상의 특수신분층인 한량이 247명이고, 출신 직함의 공신은 198명, 官奴 110명의 순이었다. 인원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직함은 대체로 1·2등의 경우보다는 품계가 낮았다. 다음으로 이들 직함에 따른 文·武官을 분석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保社原從功臣3等の 文·武官 現況

區分	人員數	比率(%)
문관	305	10.9
무관	1,177	41.9
기타	1,326	47.2
합계	2,808	100

보사원중공신 3등 2,808명 중에 문·무관에 해당하지 않는 직함인 공신은 1,326명으로 2등원중공신 중 절반 가량이었으며, 무관은 1,177명으로 약 41.9%를 차지하였다. 1등공신은 문관의 비율이 높았던 것에 비해 2·3등은 문관의 비율은

줄고 무관과 기타에 해당하는 직함의 공신이 많아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3등공신의 경우 종친 및 인척, 君에 해당하는 공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4.2 身分別 分析

조선시대 신분계층은 대체로 兩班·中人·良人·賤人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러 연구를 통해 양인·천인 두 개의 신분계층⁶⁾, 양반·平民·賤民 세 개의 신분계층, 양반·중인·양인·천인 네 개의 신분계층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여러 견해가 있는 것은 각 계층의 개념과 범위가 확실하지 않고, 특히 조선 초기에는 그 신분제도가 사회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일반적 관점에 따라 조선시대의 신분계층을 네 개⁷⁾로 구분하여 각 신분별 분석을 하고자 한다.

4.2.1 兩班

양반은 文·武官職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백성들을 지배하였던 신분계층으로, 각 등급별 양반의 인원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등에서는 通禮院의 으뜸 벼슬인 右通禮 등 65개의 직함⁸⁾은 각 1명, 사헌부의 종3품 관직인 執義 등 22종의 직함⁹⁾은 각 2명, 議政府의 으뜸 벼슬인 判義禁

6) 韓永愚 著, 『朝鮮時代 身分史研究』 (서울: 집문당, 1997), 14-15.

7) 위의 네 개의 신분계층 이외에도 신랑역천(身良役賤)이라는 양·천중간(良·賤中間) 신분계층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신분 재편성 과정에서 국가의 공민(公民)인 양인 계층을 확대시키려는 정책의 하나로, 양인 계층으로 볼 수 있다(李成茂, “朝鮮初期의 身分制度,” 『東亞文化』 第13輯(1976), 173).

8)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假引儀, 監察, 檢閱, 教官, 郡守, 錦昌副尉, 大護軍, 都正, 東原君, 東平君, 東平尉, 領中樞, 文兼宣傳官, 別武士, 別抄, 府尹, 部將, 副正字, 副提學, 副直長, 副護軍, 司藝, 西川君, 崇善君, 禦侮, 領議政, 瀛昌君, 右議政, 右通禮, 著作, 前監察, 前牧使, 前兵使, 前奉事, 前府使, 前營將, 前虞候, 前察訪, 前僉使, 前哨官, 全坪君, 典翰, 從仕郎, 左尹, 左議政, 左通禮, 知事, 直講, 贊儀, 參軍, 參議, 僉使, 僉知, 忠順衛, 忠翊衛, 判書, 判中樞, 學錄, 學諭, 行副護軍, 行司猛, 獻納, 縣監, 護軍, 訓導 등 65종이다.

등 8종의 직함¹⁰⁾은 각 3명이었다. 사헌부의 으뜸 벼슬인 大司憲 등 9종의 직함¹¹⁾은 각 4명으로 파악되며, 義禁府의 관직인 知義禁 등 3종의 직함¹²⁾은 각 5명이었다. 參奉 등 5종의 직함¹³⁾은 각 6명이며, 司果 직함은 7명, 承旨 등 4종의 직함¹⁴⁾에는 각 8명 그리고 主簿와 學生의 직함은 각 9명, 佐郎은 15명으로 조사되었다. 宣傳官 직함은 19명, 都事는 모두 24명이었다. 즉 122종의 직함을 가진 329명의 1등공신이 양반이었음이 확인되었다.

2등에서는 병사집단인 哨를 통솔하던 중9품 관직 哨官 등 25종의 직함¹⁵⁾은 각 1명, 五衛의 으뜸 벼슬인 五衛將 등 9종의 직함¹⁶⁾은 각 2명이었고 通禮院 관직인 引儀 등 11종의 직함¹⁷⁾은 각 3명이었다. 五衛에 속한 上護軍 등 5종의 직함¹⁸⁾은 각 4명, 兼司僕 등 8종의 직함¹⁹⁾은 각 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大護軍과 僉知的 직함은 각 6명, 副司正 직함은 7명이며, 都事 직함은 8명이었다. 五衛에 속한 무관직인 部將 등 3종의 직함²⁰⁾에는 각 9명이, 內禁衛와 忠翊偉 등 2종의 직함은 각 10명, 前府使 직함은 11명으로 확인된다. 守門將과 前司果

-
- 9)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假監役, 兼司僕, 兼引儀, 敎鍊官, 敎授, 大司諫, 同知義禁, 奉事, 副司勇, 副司直, 前監役, 前權管, 前縣令, 折衝, 正, 正字, 執義, 參判, 僉正, 忠贊衛, 判官, 行司正 등 22종이다.
- 10)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同知, 令, 博士, 奉敎, 修撰, 前正, 忠贊衛, 判義禁 등 8종이다.
- 11)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大司憲, 副司果, 引儀, 掌令, 前郡守, 正郎, 正言, 持平, 哨官 등 5종이다.
- 12)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校理, 前縣監, 知義禁 등 3종이다.
- 13)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監役, 經歷, 前司果, 直長, 參奉 등 5종이다.
- 14)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武兼宣傳官, 承旨, 前萬戶, 出身 등 4종이다.
- 15)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敎授, 副奉事, 府使, 副司直, 副正, 司正, 庶尹, 禦侮, 前敎授, 前奉事, 前正, 前直長, 前察訪, 前僉正, 前哨官, 正, 晉平君, 參軍, 參奉, 參議, 參知, 僉正, 哨官, 忠壯衛, 判官 등 25종이다.
- 16)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經歷, 旗牌官, 副司勇, 五衛將, 前監察, 前兵使, 佐郎, 忠贊衛, 護軍 등 9종이다.
- 17)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兼引儀, 司猛, 引儀, 前別將, 前宣傳官, 前水使, 前營將, 前主簿, 主簿, 通訓, 行副護軍 등 11종이다.
- 18)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嘉善, 同知, 奉事, 上護軍, 前武兼宣傳官 등 5종이다.
- 19)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假引儀, 兼司僕, 副護軍, 前郡守, 前權管, 前虞侯, 通德郎, 學生 등 8종이다.
- 20)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部將, 宣傳官, 前縣監 등 3종이다.

등 2종의 직함은 각 15명, 習讀 직함은 16명, 前僉使는 18명이며 副司果 직함을 가진 공신은 20명이고 前萬戶와 折衝 등 2종의 직함은 각 25명이 속한다. 忠順衛 직함은 27명, 司果는 43명이며 武兼宣傳官 직함인 공신은 67명, 出身 직함인 공신이 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즉 2등공신 가운데 양반은 79종 직함에 591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3등에서는 지방행정 구역의 단위인 군의 행정을 맡아보던 장관직인 郡守 등 18종의 직함²¹⁾은 각 1명, 五衛의 정5품 관직인 司直 등 8종의 직함²²⁾은 각 2명, 大護軍 등 4종의 직함²³⁾은 각 3명이었다. 哨官 등 4종의 직함²⁴⁾은 각 4명, 通訓 등 4종의 직함²⁵⁾은 각 5명이었고 忠壯衛 등 3종의 직함²⁶⁾은 6명, 學生 직함은 7명이었다. 司正과 護軍 등 2종의 직함은 각 8명, 副司勇과 前直長 등 2종의 직함은 각 9명, 정5품 通德郎 등 4종 직함²⁷⁾은 각 10명, 前僉使 직함은 11명이었고 副司正 직함은 12명, 副護軍 직함은 15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前權管 직함은 24명, 忠順衛 등 3종의 직함²⁸⁾은 각 25명이고 禦侮의 직함에는 30명, 司果 직함은 31명, 忠贊衛 직함은 38명이 포함된다. 折衝은 41명, 副司果 직함은 43명, 武藝 직함을 가진 공신은 49명이었다. 出身은 198명이고 兼司僕은 5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즉 3등공신 중 양반은 1,349명이었고 모두 65종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보사원종공신 3,940명 중 2,267명인 약 57.5%가 양반의 신분으로 확인되었고, 등급별 인원수를 살펴보니 1등은 122종 직함에 327명으로 1등공신의 전체 인원수 중 약 83.1%로 대부분이 양반계층이었으며, 都事 직함인 공신이 24명으로 많았다. 2등은 79종 직함에 591명으로 2등공신의 전체 인원수 중 80.3%에 해당하며 출신 직함인 공신이 99명으로 많은 수에 해당하였다. 3등은

21)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教鍊官, 教授, 軍官, 郡守, 別將, 秉節, 生員, 宣傳官, 翊衛, 前監察, 前渡丞, 展力, 前武兼宣傳官, 前別將, 前奉事, 前營將, 進勇, 參軍 등 18종이다.

22)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司猛, 司直, 上護軍, 前郡守, 前習讀, 前參奉, 直長, 判官 등 8종이다.

23)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大護軍, 前僉正, 前縣監, 僉正 등 4종이다.

24)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錄事, 前正, 定略, 哨官 등 4종이다.

25)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宣略, 前哨官, 忠翊偉, 通訓 등 4종이다.

26)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副司猛, 前主簿, 忠壯衛 등 3종이다.

27)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果毅, 副司直, 忠順衛, 通德郎 등 4종이다.

28)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前萬戶, 前司果, 忠翊衛 등 3종이다.

65종 직함에 1,349명으로 3등공신의 전체 인원수 중 48.1%이며 검사복 직함의 공신이 599명으로 가장 많았다.

4.2.2 中人

중인은 양반과 평민의 중간에 있던 신분 계급으로 양반을 도와 기술직이나 사무직에 임하였다. 중인을 각 등급별로 그 인원수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등에는 內侍府²⁹⁾의 尙設 등 5종의 직함³⁰⁾이 각 1명, 掖庭署에 소속된 雜職 司謁 등 4종의 직함³¹⁾에 각 2명, 別檢 직함은 3명, 尙燭 직함은 5명이 속하였다. 司鑰 직함인 공신은 6명, 尙膳은 8명이며 承傳色과 尙洗 등 2종의 직함은 각 9명, 書吏 직함인 공신은 11명이었다. 모두 16종의 직함에 64명이 이에 해당한다.

2등에는 내시부에서 주로 청소의 일을 맡아보던 尙茶 등 5종 직함³²⁾이 각 1명, 양반의 첩의 자손인 庶孽과 내시부의 尙設 등 2종의 직함은 각 2명, 宮門의 守直을 맡아본 尙門 및 書員 등 2종의 직함은 각 3명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尙洗와 前別提 등 2종의 직함은 각 4명, 尙燭은 7명, 司鑰은 10명이었으며 閑良 직함인 공신은 20명, 書吏와 別監 직함은 각 28명으로 많은 인원수가 이에 속하였다. 16종의 직함에 모두 116명이 중인으로 조사되었다.

3등에는 鄉校의 校生인 貢生 등 6종의 직함³³⁾에 각 1명, 교서관 소속의 잡직인 唱準 직함인 공신은 2명, 檢律과 鄉吏 등 2종의 직함은 각 4명, 庶孽 직함은 5명, 尙洗와 免役 등 2종의 직함이 각 7명, 尙更은 8명, 尙設과 尙燭 등 2종의 직함은 각 9명 그리고 諸員 직함인 공신은 10명이었다. 書員은 27명이었고 別破陣 직함인 공신은 41명, 別監은 49명이며 서리가 66명, 한량이 247명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29) 장희홍, “朝鮮時代 宦官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04), 53-54.

“환관의 신분은 양인이나 양반의 본래 신분을 유지하지만 직역에 있어서 품계를 받기 때문에 중인으로 대우받는 것이었다.”

30)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別破陣, 尙設, 尙冊, 尙弧, 前別提 등 5종이다.

31)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司謁, 尙茶, 尙藥, 尙帑 등 4종이다.

32)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檢律, 別提, 別破陣, 算員, 尙除 등 5종이다.

33) 이에 속하는 직함은 假書吏, 貢生, 別提, 算員, 書記, 書員 등 6종이다.

21종의 직함을 가진 501명이 중인 신분의 정국원종공신이었다.

따라서 보사원종공신 중 중인 신분인 공신은 약 17.3%인 681명이었다. 등급별 인원수를 확인해보니 1등에서는 64명이었고, 2등에서는 2등공신 중 약 15.8%인 116명에 해당한다. 3등에서는 3등공신 2,808명 중 17.8%에 해당하는 501명이 중인 신분이었다.

4.2.3 良人

양인은 양반과 천인의 중간 신분으로 납세와 균역의 의무가 있는 일반 백성들을 의미하며, 각 등급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등에서는 양인 신분인 공신이 없었다.

2등에서는 驛에 딸린 구실아치인 驛吏와 內吹螺赤 등 2종의 직함은 각 1명, 保人 직함인 공신은 2명, 良人 직함은 6명으로 확인된다.

3등에서는 서울과 지방의 여러 창고를 지키고 출납을 맡아본 관리인 庫直 등 9종의 직함³⁴⁾에 각 1명, 燈燭色 직함인 공신은 2명, 匠人과 正兵 등 2종의 직함은 각 3명, 中禁 직함인 공신은 4명, 保人 직함은 6명이었다. 군대에서 소리를 불던 吹打手인 吹螺赤와 驛吏, 使令 등 3개의 직함은 각 15명, 병조에 속한 하급직원인 羅將은 26명, 良人 직함인 공신은 3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상과 같이 보사원종공신 3,940명 중 양인 신분에 속하는 1등공신은 없었고, 2등공신은 10명, 3등공신은 493명으로 전체 272명이며, 전체 공신 중 약 12.8%에 해당하는 인원이 양인 계층이었다.

4.2.4 賤人

천인은 가장 낮은 신분에 속하던 계층으로 당시 賤役이던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착취와 천대를 받던 노비, 백정, 장인바치 등을 이른다. 이들의 각 등급별

34)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庫直, 工匠, 內吹羅, 步兵, 水軍, 御營軍, 餘丁, 精抄軍, 吹螺赤 등 9종이다.

인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등에는 寺奴 1명과 私奴 2명이 천인 신분의 공신이였다.

2등에서는 官奴 등 4개 직함³⁵⁾에 각 1명, 館奴와 寺奴 등 2종의 직함은 각 2명, 府奴 직함인 공신은 3명, 私奴는 4명이였다.

3등에서는 奴와 庫奴 등 2개 직함은 각 1명, 監奴 등 3종의 직함³⁶⁾에 각 2명, 署奴와 驛奴 등 2종의 직함은 각 5명, 校奴 등 4종의 직함³⁷⁾은 각 7명이 속했다. 館奴 직함인 공신은 12명, 冑奴 직함은 15명, 院奴의 직함은 18명, 府奴 직함인 공신은 51명, 寺奴는 54명이였고, 內奴 직함인 공신은 73명, 私奴는 88명이며 官奴 직함은 1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보사원중공신 3,940명 중 천인 신분의 공신은 1등공신 3명과 2등공신 19명 및 3등공신 467명으로 전체 공신 중 약 12.4%에 해당하는 489명이었음이 확인되였다.

이상과 같이 양반·중인·양인·천인 등의 4종의 신분계층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 인원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保社原從功臣 중 身分別 分析

區分		人員數		比率
兩班	1等	329	2,267	57.5
	2等	591		
	3等	1,347		
中人	1等	64	681	17.3
	2等	116		
	3等	501		
良人	1等	0	503	12.8
	2等	10		
	3等	493		
賤人	1等	3	489	12.4
	2等	19		
	3等	467		
合計			3,940	100

35)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官奴, 內奴, 署奴, 院奴 등 4종이다.

36)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僕, 嫁私賤, 監奴 등 3종이다.

37)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校奴, 營奴, 田奴, 學奴 등 4종이다.

위의 <표 17>과 같이 『보사원중공신개수녹권』에 기재된 직함을 4종의 신분으로 나누어 인원수를 분석한 결과, 양반 2,267명, 중인 681명, 양인 503명, 천인 489명 순으로 양반의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의 약 57.5%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이를 다시 각 등급별로 신분을 구분하여 그 인원수를 분석해본 결과,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等級別 身分 分析

區分	1等		2等		3等		合計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兩班	329	83.1	591	80.3	1,347	48.0	2,267
中人	64	16.2	116	15.8	501	17.8	681
良人	0	0	10	1.3	493	17.6	503
賤人	3	0.7	19	2.6	467	16.6	489
合計	396	100	736	100	2,808	100	3,940

위의 <표 18>과 같이 1등공신 396명 중 양반 3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인 64명, 천인 3명이 있었다. 1등공신은 대부분 양반의 신분으로 구성되었으나 중인, 천인 신분인 공신의 책봉을 확인함으로써 당시에 신분의 차별 없이 공신 책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등공신 736명 가운데 양반은 591명, 중인 116명, 천인 19명, 양인 10명 순이었다. 3등공신 2,808명 중 양반은 1,347명이었고 중인 501명, 양인 493명, 천인은 467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적으로 각 등급에 따른 신분별 비율을 살펴보면 양반 신분이 가장 많았으나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공신으로 책봉된 사실을 통해 신분의 제약 없이 보사원중공신으로 책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등급이 낮아질수록 양반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중인, 양인, 천인의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고위 관료들이나 왕과 가까운 친척 등은 비교적 등급이 높은 공신으로 책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 前期인 中宗代에 발급된 『靖國原從功臣錄券』에 기재된 공신의 신분별 분석 결과와 비교한 것은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靖國原從功臣錄券』과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의 신분 비율 비교

區分	靖國原從功臣錄券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
兩班	71.1	57.5
中人	14.8	17.3
良人	8.2	12.8
賤人	5.9	12.4
合計	100	100

위의 <표 19>를 살펴보면 조선 전기 발급된 녹권(중종 2, 1507년)에 기재된 공신의 신분 비율에 비해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의 경우, 대체로 양반의 비율은 줄어들었으며 비교적 사회신분이 낮았던 중인·양인·천인의 비율은 높아졌다. 이를 통해 조선 사회가 전기에서 후기로 지날수록 수직적인 사회 성격이 유연하게 변화하였고, 중인 이하의 신분인 많은 수의 사람들이 원종공신으로 책봉되어 신분상승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신분질서가 점차 동요되는 데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結 論

이 연구는 1694년 보사원종공신으로 복훈된 자에게 반사된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을 대상으로 문헌상의 기록과 현존본 녹권을 조사하여 녹권의 발급사유를 비롯하여 형태·체제·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은 숙종 6년 경신대출척에서 공을 세워 책봉되었다가 동왕 15년에 삭훈된 이후, 동왕 20년에 복훈된 공신 1등 396명, 2등 736명, 3등 2,808명 등 모두 3,940명에게 반사한 공신증명서이다.

둘째,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은 현재 11책이 국내·외 도서관 등에 소장 중

임을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본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녹권(한古朝31-258)의 보존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은 1694년에 사주갑인자인 무신자로 인출한 금속활자본 1책이다. 이 녹권의 서지적 특징은 사주쌍변, 내향2엽화문어미의 형태를 보인다. 또한 『施命之寶』의 인장을 권수제면, 포상 규정 및 특전, 보사녹훈도감의 구성원을 나타내는 부분의 3곳에 朱印하고 있어 녹권의 반사형식에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의 체제는 대체로 다른 녹권의 형식과 동일하여, 크게 권수·본문·권말의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수는 녹권명과 수급자로 이루어져 있고, 본문은 봉명일과 봉명자, 반사사유, 등급별 공신의 직함 및 성명,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권말은 녹권 발급에 관여한 관원들의 직함과 성명 등을 담고 있는데, 이 녹권은 보사녹훈도감과 보사복훈도감의 관원의 직함과 성명을 모두 기재하고 있다.

다섯째, 보사원종공신으로 책봉된 사람은 모두 3,940명으로, 3등급으로 구분되어 녹권에 기재되었다. 직함을 분석한 결과, 1등원종공신은 140종의 직함에 모두 396명이며 그 품계에 따라 정3품과 정6품은 각각 58명, 품계에 들지 못한 직함인 공신이 43명 순으로 기재되었다. 직함별 인원수는 都事 직함인 공신이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2등원종공신은 107종의 직함에 모두 736명이었고 그 품계에 따라 품계가 없는 사람이 255명, 정3품이 147명이었으며 종6품이 86명 순으로 많았다. 직함별 인원수는 出身 직함인 공신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武兼宣傳官 67명, 司果 43명의 순으로 많았다. 3등원종공신은 124종의 직함에 모두 2,808명이었으며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거나 품계를 갖지 못한 기타에 해당하는 공신이 1,765명으로 그 수가 많았고, 정3품인 공신은 684명, 정6품은 67명이었다. 직함별 인원수는 검사복이 599명, 양인이 395명, 한량 247명의 순으로 많았다. 이를 정리하면 등급이 낮아질수록 대체로 품계가 낮은 사람들이 공신으로 책봉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섯째,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에 기재된 공신의 직함을 기준으로 그들의

신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1등원종공신은 양반 329명, 중인 64명, 천인 3명이었고, 2등원종공신은 양반 591명, 중인 116명, 천인 19명, 양인 10명이었다. 3등은 양반 1,347명, 중인 501명, 양인 493명, 천인 467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양반 신분의 공신이 가장 많았으나 모든 신분의 사람이 공신으로 책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보사원종공신의 책봉에는 신분의 제약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등급이 낮아질수록 양반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중인, 양인, 천인의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고위 관료들이나 왕과 가까운 친척 등은 비교적 등급이 높은 공신으로 책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녹권의 발급 대상자의 내용과 직함을 분석한 결과, 등급이 낮아질수록 직함의 품계가 낮은 사람의 비율이 높아졌고, 신분을 분석한 결과 양반, 중인, 양인뿐만 아니라 신분이 낮아 천대를 받던 천인에게까지 공신으로 책봉하여 포상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 발급된 녹권에 대한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공신의 신분에 있어 전체적으로 양반 비율은 줄은 반면에 중인 이하 신분의 공신의 비율이 높아진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조선 사회의 수직적 성격이 점차 유연해졌다는 점과 후기로 갈수록 신분질서가 점차 동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이 연구는 조선시대 원종공신의 책봉에 관한 사실을 조사 정리함으로써 보사공신에 관한 다각도의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조선시대 신분사 및 인물사 연구에 일정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 일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조선 후기 정치적 개편과 신분 변동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古典資料

- 『經國大典』.
『光國原從功臣錄券』.
『保社錄勳都監儀軌』.
『保社復勳都監儀軌』.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
『朝鮮王朝實錄』.
『佐理原從功臣錄券』.

2. 單行本

- 신명호. 『조선의 공신들』. 서울: 가람기획, 2002.
李成茂. 『朝鮮兩班社會研究』. 서울: 一潮閣, 1995.
장세경. 『이두자료 읽기 사전』.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千惠奉.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
崔承熙. 『朝鮮後期 社會身分史研究』. 서울: 지식산업사, 200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韓永愚. 『朝鮮時代 身分史研究』. 서울: 집문당, 1997.

3. 論文

- 李成茂. “朝鮮前期의 身分制度.” 『東亞文化』 第13輯(1976). 173-191.
林基榮. “壬辰倭亂 直後 賜給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2002.
진중섭. “朝鮮 成宗朝 佐理功臣에 관한 一考察.”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1979.

書誌學研究 第60輯(2014. 12)

- 鄭杜熙. “朝鮮 世祖-成宗期の 功臣研究.” 『震壇學報』 51號(1981). 131-181.
- 진나영. “朝鮮時代に 刊行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8.
- 진나영. “朝鮮 前期 功臣錄券의 書誌學的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14.
- 崔承熙. “朝鮮後期 原從功臣錄券과 身分制 동요.” 『韓國文化』 第22輯(1998). 113-157.